

『구미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신용하 의원 외 12명

2. 제안이유
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에 단서 규정을 두어 국내외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,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시정 요구 등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에 단서 규정 추가 (안 제5조제1항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『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』의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제2조 2항에서 “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다”는 단서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, 상위 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됨.

5. 참고사항

○ 도내 및 유사 규모 타 시군 조례 현황

구 분	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	단서조항	비고
경북도	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	×	
포항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경주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재난 등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.	
안동시	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구미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영주시	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김해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진주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화성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의정부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
파주시	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	×	